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30 선고 2022가단3187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3. 4. 18.

판 결 선 고 2023. 5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2011. 7. 20. 원고를 상대로

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지급명령을 기초로 2019. 11. 7. 및 2020. 7. 27. 원고로부터 합계 47,000,000원을 추심하였는바,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47,000,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2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, 즉 원고는 2010. 7. 15. 주식회사 C(이하 'C은행'이라 한다)으로부터 19,900,000원을 상환기일 2013. 7. 15., 대출이자율 '3개월CD금리+연 10.28%',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, 원고는 2010. 12. 23.까지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다가 그 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, C은행은 2011. 6. 17.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원금 17,091,88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D 주식회사(이하 'D'라 한다)에게 양도한 사실, D는 위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. 7. 20. 이 법원에서 '원고는 D에게 18,605,630원 및 그중 17,091,881원에 대한 2011. 7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(이 법원 2011차전106227), 위 지급명령은 2011. 8. 9. 확정된 사실, 위 대출금 채무에 기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합계 47,000,000원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의 변제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.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장원지